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0호서식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 신고 <신설 2023. 12. 18.> 할 수 있습니다.

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		
신고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	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
신고사항	①신고번호	중점관리물질명 (총칭명)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
	변경사항					
[] 제품을 새로 생산·수입	변경내용					
	②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	③제품의 용도	④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(기능)	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	⑥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(%)	⑦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(톤)
[] 노출정보	제품명	변경 전		변경 후		
[] 용도						
[] 함유량						
[] 물질별 총량이 50% 이상 증가	⑧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(톤)					
	변경 전			변경 후		
[] 수입자 (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⑨상호(명칭)	⑩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⑪대표자	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⑬수입량 (톤)	⑭수입국
[] 수탁자 (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	
자료보호신청 여부		[] 해당		[] 해당없음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(유역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: 자료보호신청서 1부	수수료 15,000원 (중기업은 7,500원, 소기업은 3,000원)
------	--	---

작성방법

1. ①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2. ②란부터 ④란까지의 작성방법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8호서식(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)과 같습니다.

처리절차

